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 9.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차수 규정 및 누적회차 적용기준 규정 신설

(안 별표1, 별표4)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음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불임(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1호 다목을 라목,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4 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11조 및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생략) <신설> 다. (생략) 라. (생략)	[별표 1]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11조 및 제16조 관련) 1.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u> <u>라. (현행 다호와 같음)</u> <u>마. (현행 라호와 같음)</u>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u><단서 신설></u> 다. (생략) 라.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3. 제2호바목 및 사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나. (생략)	----- ----- ----- ----- ----- ----- 다만, <u>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u> <u>라.</u> (현행 다호와 같음) <u>마.</u> (현행 라호와 같음)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3. 제2호바목 및 사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연 락 처	(044) 201-2278, 2279